

감사위원회 규정

2018. 04. 20. 제정
2019. 03. 05. 개정
2020. 02. 25. 개정
2020. 07. 24. 개정
2022. 07. 21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-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 (위원회의 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.
 1.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
 2. 관계자의 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
 3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청
 4. 관계서류, 장부,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
 5. 금고, 장부,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
 6.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
 7. 자회사 감사조직의 활용 등
 8.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 (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승계계획) <신설 2020.02.25>

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, 승계계획 실행 시 감사위원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.

제4조 (의무)

-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,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 (위원회의 구성)

-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호선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.

제3장 운 영

제7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
제8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1주 전까지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7.21>
- ④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의결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
 - (2) 영업보고의 요구
 - (3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감사에 관한 사항
 - (1) 업무·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
 - (2) 자회사의 업무·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
 - (3)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
 - (4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
 - (5) 감사보고서 작성·제출 및 분·반기 회계결산 승인
 - (6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
 - (7) 외부감사인 선정 <개정 2019.03.05>
 - (8) 외부감사인 해임에 대한 승인 <신설 2019.03.05>
 - (9)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<신설 2019.03.05>
 - (10)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<개정 2019.03.05>
 - (11)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<개정 2019.03.05>
 - (12)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<신설 2019.03.05>
 - (13) 회사가 지정감사인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<신설 2019.03.05>
 - (14)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2.25>
 - (15)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 승계계획의 승인 <신설 2020.02.25>
 - (16)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<신설 2020.07.24>

제10조의2 (감사위원 독립성 평가) <신설 2020.02.25>

회사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상법 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 (감사위원회 활동지원 등) <신설 2020.02.25>

- ①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정)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